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안 번호	3177
----------	------

2025년 12월 19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박승진 의원 외 12명

나. 제안일 : 2025년 10월 20일

다. 회부일 : 2025년 10월 23일

라. 상정일 :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8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승진 의원)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

거 마련(안 제24조의2제1항 신설)

-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별첨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에서 사후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주민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2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p>

나. 검토 내용

“개정의 필요성”

- 서울시는 2013년 12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 시행된 이후 도시재생전략계획¹⁾을 수립하고 서울역 일대를 포함한 46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붙임 1참조)에 대해 활성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마련하여 도시재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 현재까지 총 5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선정되었으며 생활SOC·정주환경 개선, 거점시설 조성, 노후 주택 개선 등 다양한 마중물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중 서울역 일대 등 17개 지역에서는 마중물사업이 완료되었음
- 그러나, 사업이 완료된 이후 거점시설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활성화지역 내 조성된 시설의 활용도 제고와 도시재생 사업 효과의 지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²⁾

1)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2015.12.10. 최초수립) (서울특별시공고_제2015-2189호)
「20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전략계획」(2023.2.9.) (서울특별시공고_제2023-285호)

2)-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구축방안(2023, 경남연구원)**

- 여러 지자체 도시재생 완료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시설이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운영 중단 또는 비활성화 되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함. 특히 공공이 공급한 후 운영주체 및 운영관리 체계 부재가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분석
-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방안 연구(2022, 인천연구원)**
 -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방치 우려가 있어 이용 측면에서 운영에 대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는 한편 거점 시설 이용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용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도시재생 10년, 길을 잃었나, ②주민 짐 된 거점시설, 사업 끝나자 방치...**” (2023.5.31.보도 뉴스타파)
 -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시설 중 일부가 낮은 시설 이용률로 인해 방치되거나 철거위기에 놓인 사례 지적

〈 도시재생 마중물사업 완료지역 현황 〉

구분		면적 (m ²)	자치구	선정 년도	사업기간 (고시문)	마중물 예산 (고시문)	사업단계 (마중물 사업기준)	비 고
경 제 기 반 형 (2)	1	서울역 일대	1,842,600	중구/용산구	'15	'15~'22	575억원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	창동·상계	982,839	노원구/ 도봉구	'15	'16~'22	440억원	완료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중 심 시 가 지 형 (6)	1	세운상가 일대	439,356	종로구	'15	'15~'24	181억원	완료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403,000	종로구	'15	'15~'23	189억원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일 반 구 기 반 형 (9)	3	장안평 일대	508,390	동대문구	'15	'17~'21	166억원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4	용산전자상가 일대	212,123	용산구	'17	'17~'22	200억원	완료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5	마장동 일대	576,971	성동구	'17	'17~'23	123억원	완료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6	정동 일대	603,000	중구	'17	'17~'23	139억원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1	창신·승인(뉴딜)	830,130	종로구	'14	'14~'19	199억원	완료
	2	성수	886,560	성동구	'14	'15~'18	100억원	완료
	3	신촌	432,628	서대문구	'14	'15~'18	100억원	완료
	4	암사	634,885	강동구	'14	'15~'18	100억원	완료
	5	장위	318,415	성북구	'14	'15~'21	98억원	완료
	6	상도4동	745,000	동작구	'14	'15~'21	97억원	완료
	7	가리봉(뉴딜)	331,844.1	구로구	'15	'16~'21	104억원	완료
	8	해방촌	332,472	용산구	'15	'16~'22	100억원	완료
	9	난곡난향동(뉴딜)	270,795	관악구	'17	'18~'23	235억원	완료

<출처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 이와 같은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

고 있으며, 일부는 사후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붙임 2참조)하거나 기존 도시재생조례에 사후관리 관련 조항을 추가(붙임 3참조)하는 등 재생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점차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서울시도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유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 「도시재생법」 제2조³⁾에 따르면,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을 포함한 기반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3조⁴⁾에서는 “공동이용시설”的 구체적 범위와 종류를 규정하고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조성되는 공동이용 시설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하나로서 그 범위와 운영·관리 기준을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회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조례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도시재생법」 제27조⁵⁾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공동이용시설이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일종임을 고려할 때 공동 이용시설의 운영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 역시 법률상 지원이 가능한 영역에 해당하며, 해당 지원의 범위와 절차를 조례에서 구체화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20조제3항⁶⁾을 살펴보면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사업 효과의 지속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후관리의 범위, 지원 범위, 절차 등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도시재생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조례 체계 내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로 판단됨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체계를 조례에 규정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재생효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과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현행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 현재 서울시는 총 52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17개 지역에서 마중물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활성화계획에 따라 조성·운영 중인 공동 이용시설은 총 98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붙임 4참조)
- 경로당·도서관·커뮤니티센터·창업지원공간·산업지원시설 등 시설의 기능과 규모가 다양하고 운영 주체도 시·구·SH·민간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운영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운영 종료나 활용 미정 등의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사후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또한, 2025~2027년 사이 준공 예정인 시설도 다수 존재하여 향후 공동이용시설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마중물사업 이후 시설의 지속적 활용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재정적·운영상의 측면에서도 공동이용시설은 「도시재생법」에서 도시재생기반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설치·정비뿐 아니라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므로 조례에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두는 것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적 측면에서도 서울시가 ‘2세대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거점시설 조성 이후 지역 수요에 기반한 지속적 활용을 중점으로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활성화계획 수립 지침에서도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 흐름을 고려할 때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 할 것임

- 다만, 사후관리계획 수립시기, 지원대상과 범위, 선정기준, 운영성과 평가 등 세부적 관리기준은 시설 유형과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되 구체적 기준은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자치구 간 형평성과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현행 제도 환경, 정책 방향, 시설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할 때 타당성과 적정성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 비용 지원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마중물사업 완료 이후에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이용시설이 도시재생법상 도시재생기반시설에 해당하고, 그 설치·정비·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규정 및 현행 조례의 사업종료 후 관리 의무를 고려할 때, 사후관리 및 예산지원 근거를 구체화하는 이번 개정은 법령 체계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시기, 지원대상 및 범위, 성과평가 방식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원칙 수준으로만 제시되어 있는바, 향후 시행규칙 또는 운영지침 마련을 통해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유형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현황('25.9월말 기준)

구분		면적 (㎡)	자치구	선정 년도	사업기간 (고시문 기준)	사업단계 (마중물 사업기준)	사업부서
경 제 기 반 형 (5)	1 서울역 일대	1,842,600	중구/용산구	'15	'15~'22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2 창동·상계 (뉴딜)	982,839	노원구/ 도봉구	'15	'16~'22	완료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3 영등포·경인로 일대	524,409	영등포구	'17	'18~'25	사업추진 중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4 홍릉 연구단지 (뉴딜)	497,154	동대문구	'19	'20~'26	사업추진 중	(경제실) 첨단산업과
	5 김포공항 일대	1,067,713	강서구	'24	'22~'33	사업추진 중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중 심 시 가 지 형 (17)	6 세운상가 일대	439,356	종로구	'15	'15~'24	완료	(도시공간본부) 도시재창조과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7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403,000	종로구	'15	'15~'23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8 장안평 일대	508,390	동대문구	'15	'17~'21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9 용산전자상가 일대	212,123	용산구	'17	'17~'22	완료	(미래공간기획관) 용산입체도시담당관
	10 마장동 일대	576,971	성동구	'17	'17~'23	완료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11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420,892	동대문구	'17	'19~'22	활성화계획 취소 ('22.12.)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
	12 안암동 캠퍼스타운 (뉴딜)	171,000	성북구	'17	'20~'25	사업추진 중	(경제실) 대학협력과
	13 4·19사거리	628,000	강북구	'17	'17~'24	마무리 단계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14 독산우시장 (뉴딜)	232,000	금천구	'17	'17~'26	사업추진 중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15 정동 일대	603,000	중구	'17	'17~'23	완료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16 흥제역	167,663	서대문구	'19	-	계획수립 중	(균형발전본부) 서부권사업과
	17 효창공원	203,377	용산구	'19	-	계획수립 중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18 북촌가회동	273,867	종로구	'19	'21~'25	사업추진 중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19 구의역	180,000	광진구	'19	'20~'26	사업추진 중	(균형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20 풍납토성일대	246,940	송파구	'19	'20~'26	사업추진 중	(문화본부) 문화유산활용과
	21 면목패션특구	292,000	중랑구	'19	-	계획수립 중	(경제실) 뷰티패션산업과
	22 남산 일대	3,295,806	중구, 용산구	'24	-	계획수립 중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일반 근린 형 (30)	23	창신·송인 (뉴딜)	830,130	종로구	'14	'14~'19	완료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24	성수	886,560	성동구	'14	'15~'18	완료	
	25	신촌	432,628	서대문구	'14	'15~'18	완료	
	26	암사	634,885	강동구	'14	'15~'18	완료	
	27	장위	318,415	성북구	'14	'15~'21	완료	
	28	상도4동	745,000	동작구	'14	'15~'21	완료	
	29	가리봉 (뉴딜)	331,844.1	구로구	'15	'16~'21	완료	
	30	해방촌 (뉴딜)	332,472	용산구	'15	'16~'22	완료	
	31	창3동	346,000	도봉구	'17	'17~'25	사업추진 중	
	32	천연·충현동 (뉴딜)	294,590	서대문구	'17	'17~'25	사업추진 중	
	33	목2동 (뉴딜)	493,219	중랑구	'17	'18~'25	사업추진 중	
	34	수유1동 (뉴딜)	518,718	강북구	'17	'18~'24	마무리 단계	
	35	불광2동 (뉴딜)	586,400	은평구	'17	'17~'25	사업추진 중	
	36	난곡·난향동 (뉴딜)	270,795	관악구	'17	'18~'23	완료	
	37	송정동	295,000	성동구	'18	'18~'25	사업추진 중	
	38	인수동	366,551	강북구	'18	'18~'25	사업추진 중	
	39	사당4동 (뉴딜)	380,000	동작구	'18	'18~'25	사업추진 중	
	40	성내2동	388,500	강동구	'18	'18~'25	사업추진 중	
	41	도봉2동 (뉴딜)	96,615	도봉구	'18	'18~'25	사업추진 중	
	42	사근동	154,000	성동구	'19	-	계획수립 중	
	43	용암3동	168,362	은평구	'19	'19~'26	사업추진 중	
	44	목3동 (뉴딜)	148,000	양천구	'19	'20~'24	마무리 단계	
	45	공항동	149,976	강서구	'19	'20~'25	사업추진 중	
	46	중화2동 (뉴딜)	144,426	중랑구	'19	'19~'25	사업추진 중	
	47	경복궁 서측	155,484	종로구	'19	'20~'25	사업추진 중	(주택실) 한옥건축자산과
	48	신월3동 (뉴딜)	106,023	양천구	'19	'21~'25	사업추진 중	
	49	신월1동	148,000	양천구	'20	'20~'27	사업추진 중	(주택실) 주거환경개선과
	50	망우본동	154,000	중랑구	'20	'20~'25	사업추진 중	
	51	용답상가시장 일대	149,107	성동구	'21	-	계획수립 중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52	화곡중앙시장 일대	156,989	강서구	'21	'20~'26	사업추진 중	

출처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

붙임2 타 지자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	조문
1	포천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3.2.22.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2	남양주시지속가능한도시재생사업 사후지원·관리조례	2023.5.11.	제5조(사후 지원·관리계획 수립) 및 제6조(지원)
3	부산광역시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2023.8.16.	제11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4	인천광역시중구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관리· 운영조례	2023.9.27.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5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2023.10.12.	제5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6	고양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3.11.17.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6조(지원)
7	순천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2.15.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8	강원특별자치도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조례	2024.3.29.	제7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9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재생사업사 후관리조례	2024.4.1.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10	남원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5.20.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11	전북특별자치도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조례	2024.5.31.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지원)
12	광양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6.14.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13	영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7.1.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14	김해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7.11.	제6조(사후관리 지원)
15	울산광역시북구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2024.9.19.	제6조(사후관리 지원)
16	거제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 및 공 동이용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2024.9.26.	제5조(사후관리지원)
17	대전광역시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조례	2024.9.27.	제7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8	고성군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9.30.	제6조(사후관리 지원)
19	평택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9.30.	제6조(지원) 및 제7조(점검)

20	원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11.7.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6조(사후관리 사업)
21	경주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 및 거점시설관리·운영조례	2024.11.21.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
22	목포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4.12.23.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23	울산광역시울주군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5.2.27.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등) 및 제6조(재정지원)
24	인천광역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지원조례	2025.3.12.	제5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 및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25	이천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5.3.19.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6조(지원)
26	의산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5.4.2.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27	울산광역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지원조례	2025.4.3.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7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28	천안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5.5.1.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6조(지원)
29	수원시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조례	2025.5.16.	제5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30	청송군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 및 거점시설관리·운영조례	2025.6.25.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6조(사후관리 지원)
31	남동구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지원조례	2025.7.7.	제5조(사후관리지원 계획 수립) 및 제6조(사후관리 사업 지원)
32	경기도도시재생사업사후관리지원조례	2025.7.18.	제6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8조(사후관리 지원사업)

출처 : 광주 도시재생DB 플랫폼

붙임3 타 지자체 사후관리 관련 조항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	조문
1	홍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2.28.	제19조(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2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3.10.	제13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3	여수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3.15.	제23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4	안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2023.10.10.	제23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5	인천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11.	제14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6	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0.30.	제20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7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8.	제2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8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2.29.	제33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등)
9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1.3.	제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10	화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3.27.	제16조의2(도시재생 사후관리 계획 수립)
11	경상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4.3.	제15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16조(사후관리)
12	고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4.12	제16조(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13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5.2.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14	거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5.14.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관리 및 지원)
15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5.15.	제1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6	대구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6.10.	제10조의2(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17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7.8.	제18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18	부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4.7.10.	제2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19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4.7.15.	제2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20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4.7.22.	제18조(사후관리 지원)
21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4.9.25.	제8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사후관리)
22	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4.12.10.	제11조의5(사후관리계획 수립)
23	문경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4.12.30.	제22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23조(사후관리 지원)
24	함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2.20.	제17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18조(사후관리 지원)
25	보성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3.7.	제35조(도시재생사업의 관리)
26	밀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4.10.	제13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27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5.9.	제20조(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제21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
28	화성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5.13.	제29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및 제30조(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29	창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6.26.	제10조(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지원)
30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 원 에 관 한 조 례	2025.7.10.	제20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출처 : 광주 도시재생DB 플랫폼

붙임4 도시재생기반시설 현황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1	경제 기본형	서울역 (도시정비과)	은행나무집	9.45억원	경로당	59.73㎡	1층	구직영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은행나무집 지속 활용
2			빌라집	10.9억원	모아센터 (현재 운영 종료)	280.14㎡	지하1층, 지상4층	구직영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추후 활용방안 검토중
3			감나무집	11.3억원	빌딩장애인 미술작업실	146.32㎡	지하1층, 지상3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감나무집 지속 활용
4			중림창고	33.85억원	커뮤니티 책방	267.26㎡	지하1층, 지상3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중림창고 지속 활용
5			검벽돌집	26.23억원	음식점	310.45㎡	지하1층, 지상3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검벽돌집 지속 활용
6			계단집	8.38억원	카페	66.11㎡	지상2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계단집 지속 활용
7			화현사랑채	18.52억원	중구자원봉사센터	188.11㎡	지상2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화현사랑채 지속 활용
8			청소년지원 시설 (청파언덕집)	14.71억원	취약계층 자활작업장	150.32㎡	지상3층	민간	-	2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자활지원과	청소년지원시설 지속 활용
9			예장동주차장 (애니통집)	22.6억원	거주자 우선 주차장	265.5㎡	주차장 7 대	공공위탁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예장동주차장 지속 활용
10	창동 상계 (뉴딜) (동북권 사업과)	창동 상계 (뉴딜) (동북권 사업과)	이음(이音)	1.54억원	음악 프로그램 행사 및 음원 제작 작업	261.5㎡	지하1층 일부	구직영	-	-	서울시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이음 지속 활용
11			공음(共音)	0.77억원	운영 및 라이브 영상 촬영 진행	137.24㎡	5층 일부	구직영	-	-	서울시	서울시 동북권사업과	공음 지속 활용
12			창동아우르네	219.36억원	서울창업허브 창동	17,744.60 ㎡	지상5층/ 지하2층	민간위탁	116백만원	3,173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창동 지속 활용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13	영등포 (도시정비과)	MY. Factory (1호 산업지원)	31억원	홍보관, 다목적공간, 교육장	238.42m ²	지상2층	시 직영	-	170백만원	-	서울시	서울시 산업입지과	산업지원 거점시설 지속 활용
14		거점시설 (2호 생산거점)	58억원	공유작업장, 협업공간 (예정)	-	-	-	-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26~ 거점시설 조성 운영(산업입지과) 예정
15	홍릉 (뉴딜) (첨단산업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센터 및 비아오플스 센터	370억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12768m ²	지하3층/ 지상7층	공공위탁 (예정)	미정	미정	SH	SH	SH	2028년 8월 개관 예정
16		홍릉 R&D 지원센터	144억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2110.7m ²	지하2층/ 지상5층	공공위탁 (예정)	미정	미정	서울시	서울시 첨단산업과	2027년 6월 개관 예정	
17		홍릉 스트트 업 랩	49억원	교육연구시설(연구소)	433m ² 382m ²	지상4층 지상3층	공공위탁 (예정)	미정	미정	서울시			2027년 12월 개관 예정
18	중심 시가지 형	메이카스큐브 58동	38.6억원	창업입주공간	1536m ²	-	시직영	77백만원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메이카스큐브 지속 활용	
19		세운 상가 (도시정비과)	세운홀	다목적 공간 (전시, 교육 등)	4203.59m ²	지하1층/ 지상7층	시직영	4백만원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세운홀 지속 활용	
20		세운인 라운 지	5.3억원	지원공간 (현재 운영 종료)	55.94m ²	지상8층 (2층일부)	시직영	-	-	서울시	서울시 도시정비과	추후 활용방안 검토중	
21		세운2단계 소통방	530만원	소통방 (현재 운영 종료)	168.8m ²	지하1층 (716호)	시직영	-	-	서울시	서울시 도로계획과	추후 활용방안 검토중	
22		창덕궁 앞 (도시정비과)	서울생활 문 화센터 낙원	생활문화센터	580m ²	지상1층	시직영/민간	18백만원	67백만원	서울시	-	문화센터 지속 활용	
23	장안평 (도시정비과)	청년취업 사 관학교 성동 캠퍼스	31.48억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	1069.28m ²	지상7층 (1.5층(중층)- 테라스)	공공위탁	-	2,082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 지속 활용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24	용산 전자 상가 (용산업체 도시담당관)	서울 용산 시제품제작 소	28.6억원	창업기업의 양산품 제조판매 지원을 통한 서울 전자제조창업지원 활성화	6001.67m ²	2층,3층	시직영/민간	22백만원	1,793백만원	용산구	용산구 지역경제과	용산시 제품 제작소 자속 활용	
25		창업스테이션	10억원	실전단계 창업자를 위한 전용 공간 제공	434.4m ²	지하1층/ 지상2층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	16.5백만원	SH	SH	창업공간 자속 활용	
26		안암동 캠퍼스 타운 (뉴딜) (대학협력과)	85.83억원	안암 어울림 센터	854m ²	지하1층/ 지상4층	성북구청/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	60백만원	성북구	성북구 도시계획과	창업공간 주민요구시설 자속 활용	
27		스타트업 하우징	58.1억원	청년임대주택 및 코워킹스페이스	629.28m ²	지상5층	성북구/SH/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	-	3.6백만원	SH	SH	2026년 10월 준공예정	
28	독산동 우시장 (뉴딜) (서부권 사업과)	산업문화 어 울림센터	263억원	일자리사업장, 작은도서관 시니어클럽 키즈카페, 공공임대주택(20호) 등	4416.03m ²	지상8층/ 지하2층	공공위탁/ 민간	미정	미정	서울시 / SH	서울시 서부권사업과 / SH	2026년 10월 준공예정	
29		상권활성화 어울림센터	498억원	쉼카페, 다목적공간 주차장, 사무실 부산물작업장 등	7825.67m ²	지상6층/ 지하2층	공공위탁/ 민간	미정	미정	서울시 / 금천구청	서울시 서부권사업과 / 금천구 지역경제과	2025년 12월 준공예정	
30	홍제역 (서부권 사업과)	학대피해 아 동센터	6.2억원	아동복지 시설	144.13m ²	523호 1 세대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아동담당관	용도변경 검토중	
31	풍납 토성 (문화유산)	풍납동토성 안내센터	25.5억원	백제역사문화 정보 공간 및 휴게쉼터 등	430.34m ²	지상3층/ 지하1층	시직영	미정	미정	서울시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32	활용과		풍납복지 문화센터	25.2억원	어르신 프로그램 운영 및 소모임 공간 휴게쉼터 등	465.89m ²	지상3층/ 지하1층	구직영	미정	미정	서울시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
33			풍납공공 도서관	23.1억원	어린이 열람실 일반 열람실 프로그램실 등	425.27m ²	지상4층/ 지하1층	구직영	미정	미정	서울시	서울시 문화유산활용과	2026년 상반기 준공예정
34	일반 근린형	창신 승인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창신제조 지원센터 (솔루션양가)	33억원	자동재단식 공용장비실 교육장 등	499m ²	지하1층/ 지상3층	민간 (연간 용역업체 선정 운영)	-	398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창조산업기획관	지속 활용
35			서울 여담재	23억원	여성역사문화공간 (현재 운영 중단)	763m ²	A동[본관] 지하3층 지하2층 B동[별관] 지상2층 지상3층	-	-	-	서울시	서울시 기획담당관	추후 활용방안 검토중
36			백남준을 기억하는집	14억원	전시관 카페	88m ²	지상1층	시작령/민간	-	60백만원	서울시	시립미술관 창신승인CRC	지속 활용
37			창신2동 공동이용시설 (회오리길)	9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130m ²	지상3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26.8월 신규 운영자 선정 예정
38			승인1동 공동이용시설 (수수한)	18억원	주민 공동이용시설	262m ²	지상2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26.8월 신규 운영자 선정 예정
39			채석장 전망대	7억원	전망대	103m ²	지상3층	민간	1.5백만원	-	1층 종로구 1층 외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26.8월 신규 운영자 선정 예정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40	성수동 (주거환경 개선과)		창신1동 공동이용시설 (토월)	42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1267m ²	지하2층/ 지상3층	민간	-	-	토지 및 건물 1층 종로구 / 외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자하 1층 일부 26년 신규 운영자 선정 예정	
41			산마루 놀이터	28억원	기타 노유자시설	205.49m ²	지하1층/ 지상2층/ 지상10.92m	구직영	-	278백만원	종로구	종로구 도시녹지과	지속 활용	
42		성동구 (주거환경 개선과)	나눔공유센터	44.1억원	생활SOC	897.81m ²	지하1층/ 지상3층	민간/구직영	-	14백만원	성동구	성동구 자속별전도시과 / 영유아과/ 어린이장애인과	지속 활용	
43			성동상생 도시센터	17억원	산업일자리	860.21m ²	지하1층/ 지상8층	민간/구직영	3백만원	50백만원	성동구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지속 활용	
44			산업혁신공간	15.4억원	산업일자리	190.02m ²	지상2층	구직영	-	40백만원	성동구	성동구 자속별전도시과	지속 활용 (지역경제과로 이관 예정)	
45			신촌동 (주거환경 개선과)	신촌 파랑고래	36억원	청년취업사관학교 서대문캠퍼스 운영	808.21m ²	지하1층/ 지상3층	공공위탁	-	1,730백만원	서대문구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지속 활용
46			암사동 (주거환경 개선과)	상상나루來	42.3억원	시니어阿姨 다목적실 등	723.56m ²	지하1층/ 지상4층	구직영	1.6백만원	35백만원	강동구	강동구 도시계획과	지속 활용
47	장위동 (주거환경 개선과)		행복누림 복합센터	16억원	키움센터 도서관 부모지원센터	1467.13m ²	지하1층/ 지상3층	구직영	-	196백만원	성북구	성북구 이동청소년과	지속 활용	
48			김중업 건축문화의집	19억원	전시관	283.5m ²	지하1층/ 지상3층	공공위탁	-	190백만원	성북구	성북구 문화체육과	지속 활용	
49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18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477.8m ²	지하1층/ 지상3층	민간위탁	-	391백만원	성북구	성북구 아동청소년과	지속 활용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50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누리센터	18억원	헬스장	450.06㎡	지상4층	공공위탁	168백만원	140백만원	성북구	성북구 문화체육과	지속 활용
51		상도 4동	상도어울마당	49.8억원	미을공동시설 (공연장, 카페, 키즈카페, 자체정비인 쉼터 등)	707.67㎡	지하1층/ 지상3층	공공위탁/민간	28백만원	68백만원	동작구	동작구 문화정책과	기존 용도로 지속 활용
52			열린스튜디오	16억원	제1종 균등생활시설	225.8㎡	지상2층	공공위탁	-	33백만원	동작구	동작구 문화정책과	동작문화재단 사무실 노壤진 구청사로 이전예정(25.10)에 따라 활용방안 검토중
53		가리봉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가리봉 행복마루	22.4억원	건강코칭 프로그램 운영	408.6㎡	지상3층	민간	29백만원	29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54			윙윙센터	11.05억원	어르신 일자리사업단 운영	161.6㎡	지상2층	공공위탁	33백만원	33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55		해방촌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해방촌 주민공동 이용시설	226억원	교육시설	289.9㎡	지하1층/ 지상5층	민간	-	-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활용
56		창3동 (주거환경 개선과)	초안마당	19.7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환경공무관창고 및 휴게실 치매안심센터, 작은도서관)	445.2㎡	지상4층/ 지하1층	구직영/민간	-	22백만원	도봉구	도봉구 재간축재개발과	지속 활용
57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	13.8억원	어린이식당	170.65㎡	지상2층	구직영	127백만원	139백만원	도봉구	도봉구 아동청소년과	지속 활용
58		천연총 현동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관리소 영천	34.3억원	생활쓰레기 배출 거점 및 아동공동생활가정	561.76㎡	지상 5층	구직영	-	75백만원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아동청소년과	지속 활용
59			두레박 배송센터	7억원	공유주방, 상인회 사무실 등	219.31㎡	지상 4층	구직영	-	10백만원	서대문구	서대문구 지역경제과	지속 활용

연번	사업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60	목2동 (주거환경 개선과)		골목관리소 천연	24억원	생활쓰레기 배출 거점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92.7m ²	지상3층 지하1층	구직영	-	75백만원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이동청소년과	지속 활용
61			골목관리소 옥천	20억원	생활쓰레기 배출 거점 및 이동창작놀이공간	780.39m ²	지상5층	구직영	-	75백만원	서대문구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지속 활용
62			어르신문화센터	18.87억원	경로당 및 공유부엌 온실정원	366.47m ²	지하1층/ 지상4층	구직영	-	43백만원	중랑구	중랑구 어르신복지과	지속 활용
63			장미마을 재생연구소	28.72억원	공동작업장 및 마을카페	236.84m ²	지상3층	구직영	-	61백만원	중랑구	중랑구 공원녹지과	지속 활용
64			가족도서관 (행복소북)	26.06억원	실내놀이터 및 도서관 공동체정원	340.1m ²	지하1층/ 지상6층	구직영	-	35백만원	중랑구	중랑구 보육지원과	지속 활용
65			청년가도	28.58억원	커뮤니티공간 사무실 및 공유오피스	466.22m ²	지하1층/ 지상4층	구직영	-	174백만원	중랑구	중랑구 지역경제과	지속 활용
66			장미마을 관리사무소	13.5억원	마을관리사무소 (지하1층, 44.95m ²)	3499.76m ²	지하2층/ 지상4층	구직영	-	-	중랑구	중랑구 목2동주민센터	지속 활용
67	수유 1동 (주거환경 개선과)		빨래골 생활문화 공작소	24.63억원	집수리공방 마을기업작업장 자원순환체험장	498.7m ²	지상3층	민간	165백만원	162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주택과	지속 활용
68			수유청소년 문화센터	35.99억원	청소년아이트(상담공간 댄스연습실 스튜디오 등), 키움센터	494.24m ²	지상5층/ 지하1층	구직영	-	310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청소년과	지속 활용
69			빨래골 마을사랑방 '수다'	53.63억원	마을사랑방 다목적실 주민공동체 활동지원 공동부엌 사무실	842.68m ²	지상4층/ 지하1층	민간	111백만원	132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주택과	지속 활용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70	불광 2동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수유온빛마당	16.27억원	커뮤니티 리운지 수유온빛카페	207.86m ²	지상1층/ 지하1층	민간	27백만원	26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주택과	지속 활용	
71			숲속 북카페 산수유	12.98억원	숲속북카페 관리사무소	80.92m ²	지상1층/ 지하1층	구직영	-	122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주택과	지속 활용	
72			은평구 가족센터	18.92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291.69m ²	지상3층/ 지하1층	민간	-	1.5백만원	은평구	은평구 가족정책과	지속 활용	
73			불광 2동 복합청사	193.91억원	주민자치센터	3546.57m ²	지상4층/ 지하1층	구직영	-	5.3백만원	은평구	은평구 자치행정과	지속 활용	
74			생태 놀이터	14.9억원	미정	200m ²	지상2층	구직영	-	건립 중	은평구	은평구 공원녹지과	2025. 12월 준공 예정	
75			새장골주차장 (전망공원)	102.1억원	미정	1977m ²	지상1층/ 지하2층	공공위탁	-	건립 중	은평구	은평구 주차관리과	2025. 12월 준공 예정	
76			향림마을 모아센터	37.7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292.95m ²	지상3층/ 지하1층	구직영	-	8.7백만원	은평구	은평구 주택과	지속 활용	
77			난곡 난항동 (주거환경 개선과)	난곡 재생활력소	46.5억원	공연장, 공동부엌 키즈카페	815.97m ²	지상4층/ 지하1층	구직영/민간	20백만원	4백만원	관악구	관악구 주택과	2025.12월 운영계약 만료에 따른 추후 활용방안 검토중
78			난곡 스마트 공영주차장	111.92억원	공영주차장	4549m ²	지상5층/ 지하1층	공공위탁	20백만원	-	관악구	관악구 교통지도과	지속 활용	
79	송정동 (주거환경 개선과)	송정 스마트헬스 케어센터	29.6억원	어르신 건강관리 시설	212m ²	지상2층	민간	-	130백만원	성동구	성동구 통합돌봄담당관	지속 활용		
80	인수동 (주거환경 개선과)	어진이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17.4억원	모아센터 경로당	230.59m ²	지상2층	구직영	-	117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주택과	지속 활용		

연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81	사당 4동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어진아움터 주민복합 문화시설	40.7억원	어르신문화강좌 청년취업 및 창업교육 키움센터	595.12㎡	지상4층	구직영	-	732백만원	강북구	강북구 주택과	지속 활용
82			우리동네 키움센터	7.15억원	아이돌봄시설	259.56㎡	지상1층	민간	-	460백만원 (인건비 등)	동작구	동작구 아동여성과	지속 활용
83		생활SOC 복합청사	주차장 주민센터	90억원		7041㎡	지상5층/ 지하3층	미정	미정	미정	동작구	동작구 도시정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정지로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준비
84			한옥카페R1	28.29억원	카페	131.58㎡	지상2층	민간	9백만원	-	동작구	동작구 경제정책과	지속 활용
85		성내 2동 (주거환경 개선과)	성내2동 웃말경로당 아이맘강동	53.9억원	서울형 키즈카페 경로당 전통시장 고객쉼터	660.07㎡	지상1층/ 지하4층	구직영	- (2025.9 준공)	34백만원	강동구	강동구 도시계획과	25.6. 건축물 준공 이후 내부공사 및 운영 준비중
86		도봉 2동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우리동네 키움센터	50억원	아이돌봄시설	415㎡	지상4층	민간	미정	미정	도봉구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25.11. 이후 개관예정
87			희망플랫폼	60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743.89㎡	지상5층/ 지하1층	구직영	-	23백만원	도봉구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지속 활용
88		사근동 (주거환경 개선과)	사근 스마트 헬스케어센터	6.46억원	어르신 건강관리 시설	444.63㎡	지상2층/ 지하1층	민간	-	200백만원	성동구	성동구 통합돌봄담당관	지속 활용
89		중화 2동 (주거환경 개선과)	딩가동	35.7억원	청소년 커뮤니티 공간	333.27㎡	지상3층	미정	-	187백만원	중랑구	중랑구 주거개선과	'25년 12월 준공예정 이동청소년과 이관 예정
90			중화마을 활력소 마중	15.9억원	주민 모임을 위한 조성공간	222㎡	건물2층만 사용	민간	-	16백만원	중랑구	중랑구 마을협치과	지속 활용

연 번	사업 유형	사업지	시설명	사업비 (마중물 예산)	용도	규모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백만원)		소유	재산 관리관	향후 계획
						연면적	층수		수입	지출			
91	경복궁 서측 (한옥건축 자산과)	서촌주민 사랑방	3억원	한옥 게스트하우스	56.2㎡	지상1층	민간	31백만원	-	서울시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한옥스테이 활용	
92		서촌라운지		전시 및 휴식공간	121㎡	지상2층	시 직영	-	235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서촌라운지 자속 운영	
93		누각재		한옥공간 대여	153.69㎡	지상3층	시 직영	-	138백만원	서울시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주민대관 공간 자속 활용	
94	신월 3동 (뉴딜) (주거환경 개선과)	산삼문화 빌전소	65억원	시니어클럽 조리장, 청소년문화센터 등	714.44㎡	지상3층/ 지하1층	구직영	미정	미정	양천구	미정	25.10월 설계준공 예정 26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	
95	공항동 (주거환경 개선과)	꿈날개 마을관리 사무소	19.8억원	마을관리사무소	218.84㎡	지상3층	구직영	-	195백만원	강서구	강서구 도시재생과	지속 활용	
96	망우 본동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SOC	81.2억원	주차장, 약자동행시설	743.89㎡	지상2층/ 지하1층	구직영	미정	미정	중랑구	미정	25.6~26.2 실시설계 26년 상반기 착공 예정	
97	화곡 중앙 시장 (도시정비과)	마을관리소	23억원	마을관리사무소 및 자원순환정류소	2223㎡ (예정)	지상3층 (예정)	구직영 (예정)	미정	조성 전	강서구	강서구 도시재생과	26년 예산 확보 후 시설 조성 예정	
98		우리동네 키움센터	32억원	우리동네키움센터	316.2㎡ (예정)	지상3층 (예정)	구직영 (예정)	미정	조성 전	강서구	강서구 도시재생과	26년 예산 확보 후 시설 조성 예정	

출처 :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2025.9.30. 기준)

불임5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공동이용시설의 사후 관리 등)의2를 신설함에 따라 사후관리 필요시 관련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4조(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의2를 신설함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 소관부서인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 이용시설 설치여부 및 규모, 용도 · 이용대상 및 지역별 환경과 시설의 노후화정도, 사후관리 필요성 등 제반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다만, 비용 추계의 간접 근거로 활용 가능한 부산광역시 유사 사업(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비용 추정사례⁷⁾를 참고자료로 첨부함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현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7)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정(2023.8.16) 시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비용 추정사례(1개소당 약 3천만원)

(단위 : 백만원)

- (2024년) `23년 준공예정 사업장 4개소 : 120
- (2025년) `24년 준공예정 사업장 7개소(누계 11개소) : 330
- (2026년) `25년 준공예정 사업장 7개소(누계 18개소) : 540
- (2027년) `26년 준공예정 사업장 3개소(누계 21개소) : 630
- (2028년) 도시재생사업 완료 사후모니터링(총 20개소) : 630

*위의 사후관리비용에는 모니터링 평가단(전문가 등) 수당, 일자리, 거점시설운영, 주민교육 등을 모두 포함함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승진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77
----------	------

발의년월일: 2025년 10월 20일
발의자: 박승진 의원(1명)
찬성자: 고광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서상열, 서준오,
송도호, 유정희, 이영실,
이용균, 임종국, 최기찬
의원(12명)

1. 제안이유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제1항 신설)
- 나.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24조의2 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2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 그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②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24조의2(공동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를 신설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그 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에서 예산을 기편성(도시재창조과¹⁾)하여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제제팀장 김 중 현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2025 서울특별시 도시공간본부 예산서

<서울시 공동이용시설 관리 현황>

(단위 : 천원)

사업	사업예산	사업추진 세부내용
공공이용시설 관리	4,500	관리운영비 ▶ 1,500 공유재산 손해보험료 ▶ 3,000